

군포시의회 공고 제 2019 - 18호

##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 월 28 일

###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4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allnew@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금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9. 10. 22.

발 의 자 : 신금자,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 1. 제정이유

- 군포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안 제5조)
-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을 규정(안 제6조)
-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 범위를 규정(안 제7조)
- 시장의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 및 사업비 환수사항 규정(안 제8조 ~ 제9조)
-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관해 규정(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8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군포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등의 보호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등의 교육사업
3.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지원 등의 정서지원 사업
4.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체험활동·공연 등 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

6.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종사자 처우 개선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센터 경영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센터관련 정보교환
2. 센터 이용아동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3. 센터 운영의 실적평가 분석
4. 센터 운영에 대한 협의 등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